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992호 2026. 4. 20.(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2호선 외 3개소)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1호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2호선 외 3개소)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1호선, 2-2호선, 2-3호선, 2-4호선 / 사업명: 당하지구(소2-2호선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6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호선, 2-2호선, 2-3호선, 2-4호선)
- 명칭: 당하지구(소2-2호선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5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99.6.23.	
금회 시행	소로	2	1	8	국지 도로	30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98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99.6.23.	
금회 시행	소로	2	2	8	국지 도로	36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98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99.6.23.	
금회 시행	소로	2	3	8	국지 도로	9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14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99.6.23.	
금회 시행	소로	2	4	8	국지 도로	9m	지구계	중3-102	일반 도로	-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6.4.30.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6.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따로 붙임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5필지		8,305.5	912.0							
1	마전동	1070	도	7,804.7	86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마전동	1060-10	공	213.1	13.0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마전동	1061-9	공	89.7	1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4	마전동	1064-5	공	135.4	1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5	마전동	1065-4	공	62.6	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마전동	1070	한전주	8627B 251, 완정지 3L1L 5R1L 1R3, 16M	1	한국전력공사		
2	마전동	1070	통신주	당하20, 신5L8	1	㈜케이티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내용: 총 10건(건물번호 부여 7건, 폐지 3건)

연번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폐지)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1	부여	가좌동 566	가정로8번길 20 (가좌동)	'26.4.20.	신축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부여	원당동 1063-2	이음4로 101 (원당동)	'26.4.20.	신축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3	부여	당하동 1348-1	독정로 36 (당하동)	'26.4.20.	신축	인근 자연부락인 "독정마을"의 이름을 반영
4	부여	가좌동 139-3 외 1필지	가정로 135 (가좌동)	'26.4.20.	신축	가정동의 동명을 따.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5	부여	원당동 810-1 외 9필지	고산후로 153 (원당동)	'26.4.20.	신축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6	부여	검암동 12-1	검암로2번길 96-61 (검암동)	'26.4.20.	신축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부여	청라동 8-137	에코로 132 (청라동)	'26.4.20.	신축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에서 착안
8	폐지	석남동 257-3 외 1필지	건지로109번길 67 (석남동)	'26.4.20.	멸실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폐지	신현동 147-3	염곡로327번길 13 (신현동)	'26.4.20.	멸실	염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지	석남동 산23-9	서달로20번길 15 (석남동)	'26.4.20.	멸실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4. 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97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설치 등)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6.7.1.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3. 의견제출

-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6.7.1.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인현동·전동·복성동1가·복성동2가·복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9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설치 등)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6.7.1.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준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의견제출

-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27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폐지규칙안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6.7.1.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인현동·전동·복성동1가·복성동2가·복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981호

##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7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

가. 구역명칭 : (가칭)인천 금곡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7번지 일원

다. 면 적 : 372,983㎡

라. 시행기간 : 환지방식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72,983	100.0	
주 거 용 지		172,034	46.1	
	단 독 주 택	19,046	5.1	67 필지
	공 동 주 택	152,988	41.0	2개 블록
자 족 용 지		18,649	5.0	
	준주거시설용지	18,649	5.0	
상 업 용 지		11,638	3.1	
	근 린 상 업	11,638	3.1	
기 반 시 설		168,432	45.2	
	도 로	62,804	16.8	
	주 차 장	2,759	0.7	
	공 원 · 녹 지	75,222	20.2	
	공 원	40,470	10.9	
	녹 지	34,752	9.3	
	광 장	1,688	0.5	
	공 공 공 지	1,294	0.3	
	교 육 시 설	17,416	4.7	
	초 등 학 교	13,000	3.5	
	유 치 원	4,416	1.2	
	공 공 청 사	1,500	0.4	
	문 화 시 설	1,359	0.4	생활문화센터,
	복 지 시 설	3,335	0.9	다함께돌봄센터 등
	하 천	1,035	0.3	
	유수지(저류시설)	(5,100)	(1.4)	공원 중복
	가 스 공 급 시 설	20	0.0	가스 정압기
기 타 시 설		2,230	0.6	
	종 교 시 설	2,230	0.6	

##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2026. 4. 20. ~ 5. 15.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도시건축과(☎ 032-560-687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62)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공람내용	(가칭)금곡동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0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 스포츠클럽의 용어 정의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스포츠클럽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13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스포츠클럽 정의(안 제2조)
- 다.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3항”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4조”를 “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 ----- ----- ----- ----- ----- -----.</p>
<p>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li> <li>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li> </ol>
<p>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p>	<p>제3조(지원 및 범위) ① ----- ----- ----- 법 제13조제1항----- -----</p>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  
--.

② ----- 법 시행령 제9조-----  
--.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관계 법령 발취

##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

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0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불필요한 반복 규정과 근거가 없어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복되는 사항 및 약칭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정산검사” 사항을 삭제(안 제7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134,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불필요한 반복 규정과 근거가 없어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복되는 사항 및 약칭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정산검사” 사항을 삭제(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설치 및 지원”을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서구체육회”를 “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서구체육회”를 “체육회”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이하 “대부등”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

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서구체육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 제5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제4조제1항제2호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li> <li>○ 정서진·아라뱃길 마라톤대회</li> <li>○ 구민화합체육대회</li> <li>○ 시민생활체육대회</li> <li>○ 서구체육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li> </ul>	
제4조제1항제9호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누체험 교실 운영</li> </ul>	
제5조제1항제2호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회 운영보조</li> <li>○ 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li> <li>○ 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li> <li>○ 체육회 워크숍</li> </ul>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전문 체육 시설의 <u>설치 및 지원</u></p> <p>4. ~ 6. (생략)</p> <p>7. <u>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u></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설치, 지원 및 유지 관리</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lt;삭 제&gt;</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p> <p>8. ~ 10. (생략)</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u>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lt;삭 제&gt;</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u>---<u>체육회</u>-----.</p>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체육회 지원) ① -----  
-----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회-----  
-----  
-----  
--.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이하 “대부등”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

제6조(지도·감독 등) ① -----  
-----  
체육회에 -----  
-----  
-----  
-----  
-----

<삭 제>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별표 1]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제1항제2호 중

- 서구체육회동호인 한마음 대축전
-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제5조제1항제2호 중

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서구체육회 운영보조
- 서구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서구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서구체육회 워크숍

[별표 1]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제1항제2호 중

- 서구체육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 <삭 제>

제5조제1항제2호 중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체육회 운영보조
- 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체육회 워크숍

# 관계 법령 발췌

<p><b>국민체육진흥법</b></p>
<p>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lt;개정 2020. 2. 4., 2020. 12. 8.&gt;</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20. 12. 8., 2022. 2. 3.&gt; [전문개정 2016. 2. 3.]</p>
<p>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p>